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50666(본소), 2016가합51584(반소) 판결
[정산금 등 청구의 소 · 구상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B

피고주식회사 C

변론 종결2017. 6. 1.

판결 선고2017. 6. 2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63,382,556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2.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은 연대하여 7,56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194,796,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침구 원단 직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침구류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소외 D(원고 대표이사)와 피고 B의 원고회사 공동운영 및 청산

D와 피고 B은 2013. 3. 28. 침구 원단 직조, 침구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를 설립(원고의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으나, 2013. 4. 30.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4. 7.경 공동사업을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2015. 4.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약정서(갑 제3호증)의 주요 내용>

상기인 갑(D)과 을(피고 B)은 원고(주식회사 A)의 공동사업을 정리하는데 각자 150,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한다.

합의 후 원고(주식회사 A)의 재산 및 부채는 갑(D)의 소유로 하고 을(피고 B)은 이후 원고(주식회사

A)으로 발생한 재산 및 부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확인한다.

2015. 4. 11.

다. 피고 C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과의 거래 및 원고의 거래 관여 등

1) 피고 C은 2014. 5.경부터 2015. 4.경까지 F에 침구류 등을 납품하는 거래를 해왔는데, 위 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생산관리, 출고 등 업무는 피고 C이 아닌 원고가 담당했으며, 피고 C의 위 거래로 인한 순이익은 304,564,113원(총 매출액 2,646,473,500원 - 총 매입액 2,341,909,387원)이다.

2) 한편, 피고 C은 F과의 위 거래로 인한 매출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014. 5. 22.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7,07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와 피고 B이 원고를 공동운영하던 시기에 원고는 F과 극세사이불 등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F에 납품한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존재하여 F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위 하자에 따른 손실보상금 15,131,000원을 공제하였다. D와 피고 B은 원고 공동운영 관계를 청산하면서 공동운영 기간 중 발생한 원고의 채무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고 위 손실보상금 또한 위와 같은 공동운영 기간 중 발생한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손실보상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7,565,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은 ① 피고 B이 운영하던 'C'의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에 따라 또는 ② 2015. 7. 6. 작성된 외주업체 자재 및 불량손실내역(갑 제6호증)에 피고 B 몫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서명한 바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피고 B 몫의 위 손실보상금 7,565,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와 피고 C은 F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원고는 수주, 하청업체에의 작업지시, 제품 배송 및 보관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 C은 대금결제 등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공동운영 및 수익배분

약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위 약정에 따른 수익금 배분 비율은 원고와 피고 C이 균등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거래에 따른 순수익 304,564,113원 중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152,282,056원(위 304,564,113원 $\times$ 1/2,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위 2)항 기재 공동운영 및 수익배분 약정에 따른 F과의 원활한 거래 도모를 위해 2014. 8. 22. F 팀장 소외 1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 C과 사업을 공동운영 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원고와 피고 C이 절반씩 부담해야하는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활동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와 피고 C, F은 F의 중국회사 'J'(이하 '중국업체'라고 한다)에 대한 재고품회수와 관련하여 2015. 7. 6. 재고 28,000를 F이 8,400개, 원고와 피고 C이 각 9,800개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C은 위 약정을 위반하여 자신의 재고품 부담분 9,800개 중 1,628개를 제외한 8,172개를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를 회수하였다. 원고는 위 재고품을 피고 C 대신 회수함으로써 ① 관세, 부가세, 창고보관료 등으로 합계 26,398,850원을 지출하였으며, ② 2015. 7. 6. 약정 당시 환율로 계산한 제품 단가에 비해 싼 가격으로 위 재고품 중 일부인 7,929개를 처분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이 11,080,805원¹⁾ 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37,479,655원(26,398,850원 + 11,080,8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는 2014. 5. 22. 피고 C에 7,07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2)항 기재 공동운영 및 수익배분 약정에 따라 피고 C 명의로 가입한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를 원고가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7,070,000원 중 피고의 부담분 1/2에 해당하는 3,53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K회사5,134개	2015. 12. 21. ~2015. 12. 27.	$5,134 \times 14.25 \times 1,126 = 82,375,030\text{원}$	$5,134 \times 15,000 = 77,010,000\text{원}$	5,365,030원	11,080,805원
L회사2,795개	2016. 9. 19. ~2016. 10. 11.	$2,795 \times 14.25 \times 1,126 = 44,845,775\text{원}$	$2,795 \times 14,000 = 39,130,000\text{원}$	5,715,775원	
※ 재고품 1개당 단가는 14.25달러이며, 2015. 7. 6. 당시 달러 환율은 1,126원임.					

1) 손실보상금 7,565,500원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경부터 2014. 7.경까지 F에 공급한 제품 중 불량품이 존재했던 사실, 원고와 피고 C 및 F은 2015. 7. 6. 위 불량품의 손실보상금을 총 15,131,000원으로 확정하고 원고와 피고 C이 이를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F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위 손실보상금 15,131,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손실보상금에 대한 원고와 피고 C의 부담비율은 균등하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7,565,500원(위 손실보상금 15,131,000원 $\times$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도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F과 손실보상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원고와 공동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한 당사자는 회사인 피고 C이지 개인인 피고 B이 아닌 사실(원고는 갑 제6호증의 약정 당사자가 피고 B이 아닌 피고 C임을 전제로 갑 제6호증 제3항 기재 재고품 부담분 9,800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피고 C에 대하여 하고 있다)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 B이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 대해 위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익정산금 152,282,056원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4, 5, 8 내지 12, 15 내지 18, 20, 28,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C 명의로 F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작성된 거래명세서 원본을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 직원 G은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수차례 F 직원 M과 피고 C 명의로 납품될 제품의 종류, 수량, 제품배송지 등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③ F과의 거래에 피고 C 측 협력업체로 관여한 업체들이 피고 C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피고 C로부터 송금 받은 금융자료 등을 원고에게 교부한 바 있으며, 다수의 협력업체들은 F과의 거래에 있어서 피고 C이 아닌 원고로부터 주문을 받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대금결제만 피고 C에 청구한 사실, ④ 거래상대방인 F 역시 2014. 6. 이후에도 제품은 원고로부터 공급받되 회계처리만을 피고 C 명의로 한다고 알고 있었으며,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도 원고 대표이사 D와 협의하고 불량품 반품 역시 전량을 원고에게 한 사실, ⑤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원고에게 F과의 거래와 관련된 단가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여 교부한 적이 있는

사실, ⑥ 원고는 2014. 5. 22. 피고 C에 7,07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일자는 피고 C이 F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채권 보험계약을 체결한 일자와 동일하며 그 금액 역시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와 동일한 사실, ⑦ 피고 C의 직원 H은 원고에게 F과의 거래에 관한 정산서(갑 제4호증)를 송부한 적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의 사업운동을 그만둔 이후에도 F과의 거래에 한하여는 종전과 같이 사업을 공동운영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약정에 따른 수익금 배분 및 비용 부담 비율은 균등하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F과의 거래로 인한 수익금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동업관계 정리 이후 F과의 거래는 피고 C이 단독으로 하되 원고는 단순히 피고 C의 사업운동을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8, 19 내지 27, 38, 46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5호증의 공급자란에 원고의 상호가 아닌 피고 C의 상호만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을 제7호증의 보험계약자란에 피고 C의 상호만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회사인 원고가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8개월 이상 피고 C의 영업에 위 인정사실과 같은 막대한 도움을 주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 C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F과의 거래를 함으로써 피고 C이 얻은 순수익 304,564,113원 중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 152,282,056원($304,564,113원 \times 1/2$,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접대비용 1,500,000원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22. F 직원 I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과 공동으로 F과 거래를 하면서 이와는 별개로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F에 매트 커버 등을 공급한 적이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10. 29. 원고 명의로 F과의 거래로 인한 매출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매출채권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8. 22. 당시 원고는 피고 C과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거래관계 이외에도 F과 독자적인 거래관계 형성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I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원고의 독자적인 거래관계 형성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피고 C와의 공동운영 약정에 따른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출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위 비용의 1/2에 대해 비용을 분담해야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 C이 위 비용을 분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중국업체 재고품 관련 손해 37,479,655원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6, 14, 17,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은 F의 중국업체에 대한 재고품 회수 물량 중 9,800개씩을 각 부담하여 L/C오픈을 통해 처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5. 12. 20.과 2015. 12. 24. 피고 C이 위 약정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재고품 중 8,172개를 중국업체로부터 회수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재고품을 회수한 이후 피고 C에 이를 인수·처리할 것을 통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0호증, 을 제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국업체가 원고에게 피고 C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재고품을 회수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며 중국업체에 피고 C 부담분 8,172개를 회수해가겠다고 요청한 것은 원고 자신인 사실, 원고가 중국업체로부터 회수한 피고 C 부담 재고품 7,929개를 판매한 일자는 2015. 12. 21.경부터 2016. 10. 11.경까지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재고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은 원고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한 원고의 비용지출 등을 피고 C의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가 위 회수 재고품 중 일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일자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약 3개월 후인데 원고는 피고 C이 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회수 재고품을 스스로 판매하면서도 이에 대해 피고 C에 통지한 적이 없고, 2016.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K회사에 위 회수 재고품 중 5,134개를 판매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밝히지 않다가 2017. 4.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당시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회수 재고품을 염가에 판매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믿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매출채권보험료 3,535,000원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 C이 2014. 5.경 F과의 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및 원고가 2014. 5. 22. 피고 C에 7,07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일자가 피고 C이 F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채권 보험계약을 체결한 일자와 동일하며 그 금액 역시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와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비용분담 비율은 균등하다고 추인할 수 있으며 매출채권보험료 또한 위 약정에 따른 사업 공동운영을 하면서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매출채권보험료 7,070,000원 중 피고 C의 부담비율에 상응하는 3,535,000원($7,070,000\text{원} \times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C은 원고에게 163,382,556원(① 손실보상금 7,565,500 + ② 수익정산금 152,282,056원 + ③ 매출채권보험료 3,535,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12.부터 피고 C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D와 피고 B이 원고를 공동운영하던 때인 2013. 9. 12. 원고는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3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는데, D와 피고 B이 위 대출에 대하여 각자 150,000,000원씩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중소기업은행이 피고 B에게 변제요구를 함으로써 2015. 9. 10. 피고 B은 원고를 대신하여 중소기업은행에 15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위변제한 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 B과 D가 원고에 대한 공동 사업을 정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갑 제3호증(합의약정서)의 경우, D와 피고 B이 2015. 4. 11. 위 합의약정서를 소외 N의 입회 하에 작성한 적은 있으나, 피고 B은 위 합의약정서 작성 직후 자신의 부담금 150,000,000원에서 피고 B이 D와 O(D의 처)에게 빌려주었던 100,000,000원을 공제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D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위 합의약정서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합의약정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

갑 제3호증(합의약정서)은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그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의 채무 중 150,000,000원을 부담하여야하고, 피고 B이 원고를 대신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변제한 150,000,000원은 위 피고 B 부담금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이 원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위 150,000,000원에 대한 지급책임이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B이 위 합의약정서에 서명·날인한 이상 일단 위 합의약정서는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합의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피고 B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닌 합의 상대방 D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가 피고 B과 위 합의약정서를 무효화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합의서가 작성되거나 적어도 D가 소지하고 있던 합의약정서 사본도 원본과 함께 그 자리에서 폐기되었어야 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달리 D와 피고 B이 위 합의약정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합의약정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2015. 4. 11. 당시 원고의 채무 중 15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합의약정서가 무효가 아니라면 피고 B이 반소로 구하는 150,000,000원 채권은 위 합의약정서의 피고 B 부담금 150,000,000원 채무와 상계되어 소멸된 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남대하

판사항성민

판사이준석

1) 위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근거 등은 아래와 같다.